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,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 중 “인정한 사항 다만, 제2항의 공고 시에 명기(明記)하는 사항에 한정 한다”를 “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	제4조(연도별 건축사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건축사 실무교육과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사람(이하 "실무교육 실시 신청기관등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과정 신청서를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~3. (생략)	1.~3. (생략)
4. 그 밖에 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<u>인정한 사항</u> 다만, 제2항의 공고 시에 명기(明記)하는 <u>사항에 한정 한다.</u>	4. ----- ----- <u>인정하여 제2항에 따라</u> <u>공고할 때에 기재한 사항</u>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 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	제15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7월 1</u> <u>일</u>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

한다.
